

척추갈림증...

1/10,000 발병 가능성과 8/100,000의 생존 가능성



베단 심슨▶ 옥! 엇!

케이론 심슨▶ 여보, 왜그래요?

베단 심슨▶ 아기가 배를 또 발로 찼어요.
아기가 갈수록 활동적이네요~

케이론 심슨▶ 우리 아기 엘로이즈.. 하루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심슨부부는 아이가 태어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강인한 부모가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10만대 8이라는 생존 가능성을 뚫고 태어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임신 20주차가 되었을 즈음, 베단은 정기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었다. 자신의 소중한 아기의 모습이 이상하다는 것이었다. 아이의 머리 치수가 발달 속도에 맞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아이의 척추가 시기에 맞춰 제대로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녀의 아이의 병명은 척추갈림증(Spina Bifida)이었다. 이런 증상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 마비가 오거나 방광이나 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뇌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그녀는 아이가 척추갈림증에 걸릴 확률이 1만분의 1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 보다 더 심란한 것은 그 아이 중 80%가 부모의 선택으로 세상 빛도 못 보고 태중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였다.

그녀에게도 담당 의사는 다른 부모들 처럼 3가지의 옵션을 주었다. 1) 그냥 이대로 척추갈림증을 가진 아이를 낳는 것, 2) 다른 80% 부모님들처럼 아이를 지우는 것, 그리고 3) 태아복원수술을 하는 것.

의사들은 2번째 옵션을 선택할 것을 제안했지만, 심슨 부부는 3번째 옵션을 택했다. 엄마로서 배단은 태동이 있는 아이를 병이 있다는 이유로 죽인다는 것이 절대 용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있대도 아이를 고치고 싶었다. 이 수술을 위해서는 양수 진단과 여러 차례의 MRI와 기타 스캔을 통해 검진을 반드시 마쳐야 했다.

임신 24주차에 접어들어 수술 당일, 영국과 벨기에 출신 저명한 의사들이 수술을 집도했다. 그리고 수술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었다. 먼저 엄마의 배를 열어 아이의 하부를 드러낸 후, 아이의 아래쪽 척추의 벌어진 틈을 꿰매었다. 그리고는 아이를 다시 엄마의 배 속으로 넣어 나머지 임신기간을 엄마 뱃속에서 지내며 다른 여느 태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4시간 후, 산모는 뱃속의 아이와 수술실을 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걱정하고 있는 엄마에게 '나 아직 건강해요'라고 말하듯이 힘차게 발길질하는 아이의 태동이 수술이 성공하였다는 확신을 가져다 주었다.

주치의▶ 배단, 저는 엘로이즈를 이미 안아 보았답니다~ 아이를 다시 안아볼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4월 출산 때 다시 뵙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영국에서 일어난 일을 토대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최근 미국 뉴욕에서는 여성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24주 이상 임신부의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 “재생산건강법Reproductive Health Act”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낙태를 합법화 시킨 Roe 대 Wade 사건 판결이 있는 지 46년이 되는 해에 입법이 되었습니다. 뉴욕 주법은 낙태를 전반적으로 허용을 하긴 하지만, 24주이상 된 임신부의 경우에는 임신부의 건강 사유가 아니라면 낙태를 금지했었습니다. 이번 재생산건강법은 이런 낙태 금지를 해제하고 아예 낙태가 죄라는 사실조차 지워버렸습니다. 재생산건강법과 종합피임보장법Comprehensive Contraception Coverage Act이 제정 되던 날, 뉴욕주 노동법 개정안(Boss Bill)도 또한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종합피임보장법은 FDA가 허락하는 피임약과 기구와 같은 제품들을 기업들도 보험으로 보장하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었고, 개정된 뉴욕주 노동법은 고용주가 종교적인 신념을 앞세워 여성의 재생산과 건강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법이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급진적인 법은 제정이 되자마자 아주 크게 이슈화 되었습니다. 어느 한 남성이 자신의 임신한 여자친구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처음에는 여자친구 살해죄와 태아 낙태죄, 두 가지 죄로 기소 당했는데, 이 법이 제정되면서 태아를 살해한 것에 대한 기소가 취하되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낙태가 더 이상 형법상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태아를 죽여도 괜찮다고 결정지은 것이나 다름 없는데요. 뉴욕주법에 따르면 위 이야기 속 심슨의 아이는 치료를 위해 자궁 밖으로 나왔을 때는 죽이면 안 되는 존재이었으나, 지금은 다시 자궁 안에 있으니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죽여도 되는 존재가 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번 심슨의 척추갈림증 아이 수술 사건은 태아생명 경시현상이 팽배한 세상에 태아 또한 우리와 같은 생명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살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잘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뉴욕주의 급진적인 생명경시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